

의안번호	제493호
의결 연월일	2016년 월 일 (제 352 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3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16.2.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6.8.4.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6조제1항)
-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안 제8조) 등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지방공공기관(이하 "충청북도 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 나. 충청북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충청북도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

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충청북도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모전, 전람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적 가치 추구하고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쾌적성·안정성·기능성의 확보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주변환경과의 조화
6. 이용자 중심의 복지디자인 적용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등

제6조(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내 언론매체 및 도 홈페이지

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흥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 및 시·군의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 등에 게재하여 진흥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공청회 및 의견 제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장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8조(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5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심사 및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에 필요한 심사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대상 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심의 제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를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디자인 심의대상) 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 심의를 위한 소관 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며,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조형)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구성, 상호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위원회는 도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도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공공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고 조치계획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자문대상) ① 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완료 단계까지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자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자문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자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사업시행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 시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⑧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22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제안서의 보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24조(공청회)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전문가)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의 각 부서의 장 및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디자인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의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제2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용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0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품 작품의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5명 이하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공공시설물 등의 제작·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제작·설치·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건립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제9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시설물의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그늘막, 정자, 파고라 등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등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가로판매대, 관광안내소 등
보행시설물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볼라드, 펜스,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등
운송시설물	방음벽, 신호등주 등
도로시설물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가로등, 보안등, 안내표지판, 교통 표지판, 이정표, 방향안내판, 공원/관광/문화재안내,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장애인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공공예술 및 조형물	공공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등
공공용품	기념품, 공공 공예품 등
시각 이미지	CI, BI, 캐릭터, 엠블럼, 공공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 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

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흥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충북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등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수립
 - 공공디자인 위원회 수당
 - 공공디자인 용역 제안서의 보상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23조(제안서의 보상) ① 충청북도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안 제3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추계하였음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수립
 - 70,000천원 × 1식 = 70,000천원
- 공공디자인 위원회 연 평균 12회 개최
 - 참석위원 7인 × 평균 수당 10만원 × 12회 × 5년 = 42,000천원
- 공공디자인 용역 제안서의 보상
 - 시범사업 예산 × 13 / 1000 × 5년 = 13,000천원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200,000천원 × 1개소 × 5년 = 1,0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1,125,000천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자체재원 사용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출	281,000	211,000	211,000	211,000	211,000	1,125,00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수립	70,000	0	0	0	0	70,000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공공디자인 용역 제안서의 보상	2,600	2,600	2,600	2,600	2,600	13,00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 재원조달 : 도 자체재원 사용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김 학 두